

## 2025년 의료관광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추가 지원 사업 공고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공모 합니다.

2025년 9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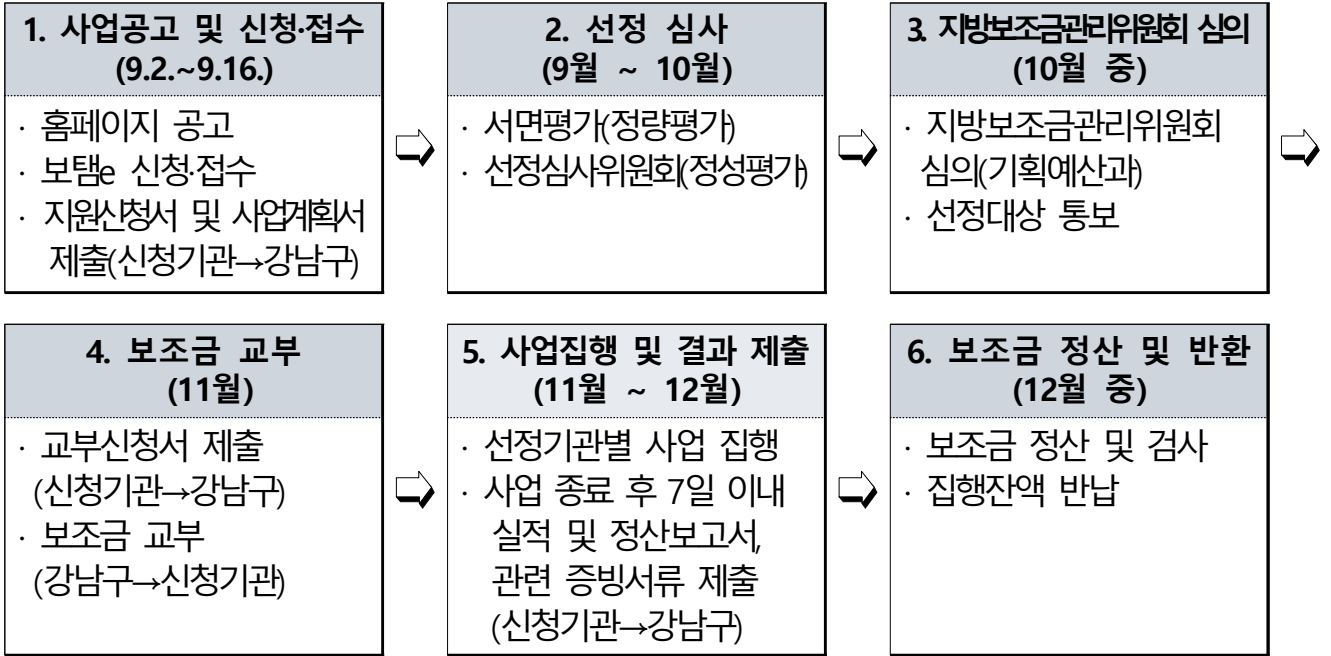
- 사 업 명 : 의료관광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추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9월 ~ 12월
- 지원대상 :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2개 기관 내외(의료기관, 유치업체)
- 지원내용 : 의료관광 협력기관 온·오프라인 외국어 홍보마케팅 사업비 지원

#### 【 지원 사업 범위 】

- 온라인 홍보마케팅
    -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 등
    - ▶ 외국어 SNS 채널 구축 및 정비 등  
(사업운영 기간 내 콘텐츠 업로드 제작 건수 등 실적 要)
    - ▶ 홍보영상 제작 및 업로드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 외국어 홍보물 및 진료서식 제작 등  
ex) 홍보물(브로셔, 리플릿), 진료계약서, 수술동의서, 주의사항, 의료분쟁해결 절차안내문 등
- ※ 모든 사업은 외국어 대상 사업으로, 국문 홍보마케팅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후 선정기관별 사업 집행
- 지원한도 : 선정기관 사용 전체 사업비의 50~70% 지원
  - 온 라 인 : 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기관당 최대 200만원)
  - 오프라인 : 사업비의 최대 50% 지원 (기관당 최대 150만원)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5. 9. 2.(화) ~ 9. 16.(화)
- 신청대상 :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의료기관, 유치업체)
- 신청기간 : 2025. 9. 2.(화) ~ 9. 16.(화) 18:00 限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견적서 등  
 ※ 공모신청서 내 대표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기관직인 날인 후 제출**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접속 → ②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보탬e 공모사업현황 중 **‘2025년 의료관광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추가 지원사업’** 선택 → ⑤ **‘신청’** 선택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은 <https://www.losims.go.kr/sp> 접속  
 -> 참여와소통 -> 공지사항 -> 보탬e시스템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교재 붙임의 보탬e 강의교재(민간보조사업자용) 참고

○ 문 의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관광진흥과 (☎ 02-3423-7024)

## 지원대상 선정절차

(1·2차) 정량·정성 평가

⇒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 □ 1차 서면심사 : 정량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평가 및 배점
- 신청서 및 사업계획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허위 작성 여부) 확인
- 평가 기준 (80점 만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외국인환자<br>유치 환경 | 1-1) 신청언어권 전담 직원 (통역포함) 보유 여부 (5점)<br>1-2) 다국어 홈페이지(국문제외) 구축 여부 (10점)<br>1-3) 다국어 SNS(국문제외) 홍보 운영현황 (5점)<br>1-4) 다국어 홍보물(국문제외) 보유 여부 (10점) | 30점 |
| 의료관광<br>활성화 노력 | 2) 2024~2025년도 강남구의료관광 사업 참여 실적 (20점)  | 20점 |
| 유치지원<br>필요기관   | 3-1) 최근 2년간 의료관광사업 미수혜 협력기관 (10점)<br>3-2) '25년 의료관광사업 신규 협력기관 (20점)  | 30점 |

\*서면평가 점수 80점 만점 중 20점 미만인 기관은 서류 탈락

- 선정기준
  - 신청기관 신청금액이 예산범위 이하 금액일 경우 서면평가 점수 20점 이상인 기관으로 선정

### □ 2차 심사 : 정성 평가(신청기관 신청금액 예산범위 초과시 정성평가)

- 신청기관 신청금액 예산 범위 초과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비고 |
|-------------|--|----|
| 사업계획<br>적정성 | 1-1) 사업계획 비용 산출액 적정성 여부 (10점)<br>1-2)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여부 (10점) |    |

- 선정기준
  - 1·2차 평가 점수를 합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고득점 順으로 선정**

· 동일 점수로 경합 시 **우선순위 적용**

| 구 분  | 先순위   | 後순위                    |
|------|---|------------------------|
| 필수조건 | 최근 2년간 의료관광사업<br>미수혜 기관   | 최근 2년간 의료관광사업<br>수혜 기관 |
| 우선순위 | ① 2025년 신규 협력기관<br>② 해외 외국인 대상 홍보 채널이 부족한 기관<br>③ 신청 언어권 전담코디네이터 보유한 기관 |                        |

**□ 3차 심사 :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2차 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부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의 및 최종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외국어가 아닌 국문 홍보마케팅 사업인 경우
  - 신청한 사업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청서류(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 등 기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 추후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시, 同 사업 보조금 이중 교부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2025. 10월 말 예정,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추진**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보탭e에 등록 후 신청
- 교부방법 : 보탭e를 통해 등록 계좌로 이체
- 사업추진 :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선정기관별 사업 진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신청대상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선정기관
  - 신청기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마감일 : 2025. 12. 24. 限)
  - 신청방법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보탭e로 제출
  - 증빙서류 :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결과물 등 제반서류 일체
- ※ 결과물은 제작(정비) 내역, 활용 내역 등 구체적 자료 要
-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함**

## 유의사항

- **[사업의 변경 및 중단]** 사업 진행 중 변동사항(사업계획 변경 혹은 사업 중단) 발생 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탭e에서 신고
  - ※ 변경신고 없이 사업 진행 시, 추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출]** 사업비의 지출은 보탭e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의거하여 집행된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를 원칙
- **[사업결과 보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2025. 12. 24. 限)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
  - ※ 사업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등 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작성
  - ※ 예산집행내역은 예산비목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 ※ 결과보고서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책자형태 또는 CD로 제출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자료 미제출 시 지원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기관은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강남구 결정에 의함

- ※ **지원 제외 대상(선정 후 적발 시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은 사업
- ※ **교부결정 취소 사항** (관련 조례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

□ 문의 :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의료관광팀 이영화 주무관 (☎ 02-3423-7024)

붙임 보조사업 신청 서식 일체. 끝.